

부천시학교급식시설및설비지원조례폐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3월 8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3년 3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3년3월13일) 상정
- 제1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3년3월13일)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상훈)

□ 폐지이유

- 이 조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학교급식시설 및 설비지원사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1996. 7. 18(조례 제1428호)자로 공포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 현재 우리시는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 급식시설 설치가 대부분 완료되어 있는 실정으로
- 이 조례는 조례로서의 실효성이 없으며 위원회의 운영도 비효율·비합리적인 면이 있어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동 조례 폐지”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신설학교 급식시설 설비는 의무조항인가	○ 의무조항임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학교 급식이 자체급식과, 위탁급식으로 구분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급식의 경우 식단 운영이 위탁급식보다 부실하다는 여론이 있으나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급식을 위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의 체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학교급식시설및설비지원조례폐지안

의안번호	제97호
의결연월일	2003.3.19 (제103호)

제출년월일 : 2003. 3. 8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학교급식시설 및 설비지원사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1996. 7. 18 (조례 제1428호)자로 공포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 현재 우리 시는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 급식시설 설치가 대부분 완료되어 있는 실정으로
- 이 조례는 조례로서의 실효성이 없으며 위원회의 운영도 비효율·비합리적인면이 있어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동조례폐지”

□ 첨 부

- 부천시학교급식시설및설비지원조례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학교급식시설및설비지원조례폐지조례안

부천시학교급식시설및설비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학교급식시설및설비지원조례(1996. 7. 18)

개정 1998. 10. 10 조례 제1603호
1999. 9. 8 조례 제169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5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지원사업(이하 "학교급식시설"이라 한다)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관련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급식시설대상) 학교급식시설 대상은 부천시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로 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학교급식시설 보조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을 위하여 학교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생업무 담당국장, 학교 교육관련 업무담당부서의 장, 부천시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3인, 시의원 3인, 교육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

제4조(학교급식시설 보조) ① 시장은 예산안 심의요구시 학교급식 시설 보조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부천시의회에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시설 보조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천시의 학교급식 현황
2. 학교급식의 재정현황
3. 당해년도 급식지원 보조금액

4. 연도별 학교급식시설 지원계획

제5조(보조신청 및 지급) ①시장은 연도개시 10일이내에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각급학교의 장은 연도개시 1월내에 보조신청서를 제출한다.
②보조신청서를 제출한 학교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연도개시 2월이내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시설 및 설비지원사업의 보조금액을 연도개시 6월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6. 7. 18 조례 제1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0. 10 조례 제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9. 8 조례 제1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